### [서식 예] 양수금청구의 소(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)



# 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### 양수금청구의 소

### 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〇〇. 〇〇. 〇〇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 청 구 원 인

- 1. 원고는 20○○. ○. ○. 피고 소유의 건물을 피고로부터 임차한 소외 ◈◆◆와 전차보증금 50,000,000원으로 전대차기간은 20○○. ○. ○○.까지로 하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당일 위 전차목적물을 명도 받아 사용하다가 전대차기간이 만료한 20○○. ○. ○○. 위 전차목적물을 다시 소외 ◈◆◆에게 명도한 사실이 있습니다.
- 2. 원고는 위 전차목적물을 명도한 뒤 소외 ◈◈◈에게 신속한 보증금의 반환을 청 구하자 소외 ◈◈◈는 자신도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임차보

증금을 반환 받는 즉시 원고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하였는데, 피고가 항 이유 없이 계속 미루고만 있어 자신도 답답하다면서 차라리 소외 ��� 기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양도해줄 것이니 직접 반환 받아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의해와 원고가 이에 동의하자 소외 �� 는 20〇〇. 〇〇. 〇. 원고에게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양도한다는 채권양도양수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, 위 통지서는 그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되었습니다.

- 3. 그 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양수금을 신속히 지급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는 한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현재까지 전혀 지급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
- 4.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양수금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채권양도통 지서가 피고에게 도달된 날의 다음날인 20〇〇. 〇〇. 〇〇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## 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

1. 갑 제2호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

1. 갑 제3호증 채권양도양수통지서

1. 갑 제4호증 우편물배달증명서

#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 O O O . O O . 이 연고 O O O (서명 또는 날인)

### ○○지방법위 귀중

관 할 법 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☞소멸시효일람표 <u>,</u> *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용	・인지액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・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절차 및 기 간	· 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기 타			

#OF 1 대한법률구조공단



#### 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: 민법 제467 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#### 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